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1나2230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주연

피고, 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박기혁, 김도연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남오, 제용민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6. 15.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1. 2. 선고 2020가소7758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2023. 6.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2020.

3.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단체와 상품단가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참가인이 생산한 물품을 배송받아 각 E조합 F에서 주문받은 대로 보조참가인의 물품을 배송하여 주고, 위 물품이 판매되면 그 대가로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매출액의 15%를 위탁수수료로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보조참가인과의 계약에 따라 미 기표분과 재고분의 담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을 2016. 10. 7.부터 2017. 10. 6.까지, 보험가입금액을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피고의 이행보증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기간을 2018. 10. 6.까지 연장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20.경 재고 관련 적정성 및 거래확인을 위한 심사자료를 보조참가인에게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재고차액 39,042,542원이 확인되어, 이 사건 보험금을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후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2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11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구상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보조참가인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반품할 재고가 없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권원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요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4 내지 161820 내지 2226 내지 30호증, 을나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공급한 거래내역서(갑 제14 내지 16호증)에 기재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총 공급가액은 259,670,195원이고, 같은 기간 원고가 각 E조합 F에 공급한 총 공급가액(을나 제3호증)은 237,298,127원인 사실, 보조참가인이 2018. 10. 18.부터 2018. 10. 30.까지 원고로부터 4,038개의 물품 반품요청을 받아 44,787,455원을 반품처리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가액과 각 E조합에 공급한 재고 차액은 22,372,067원(= 259,670,195원 - 237,298,127원)인데 보조참가인은 위 재고 차액을 상회하는 44,787,455원을 반품처리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해야 할 재고 차액은 남아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3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면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수익자의 악의는 그 수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는가에 달렸다 할 것인데 피고는 보조참가인의 내부정산자료를 토대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그에 대한 반박자료를 송부하였음에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금소송에 응소할 것을 원고에게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을 당시에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선의의 수익자라도 패소한 때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되고, 여기서 소를 제기한 때란 ‘소장 부분이 송달된 때’를 말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3. 24.부터 상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E조합 EDI자료(을나 제3호증)을 신빙할 수 없고, 보증기간 내에 미반환 재고가 발생하였을 수 있으며, 원고는 채무 없음을 알고 임의로 변제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조합 EDI자료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제3자인 E조합측에서 작성한 자료로서 신빙할 수 있고, 오히려 갑 제20, 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의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있어 단가가 잘못 기재되기도 하는 등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정산자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보증기간 내에 추가 미반환 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갑 제8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확정적 변제 또는 종국적 수익귀속의 의사로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추후 법률적으로 지급의무를 다룰 것을 예정하고 피고와의 다른 계약 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로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하여 반환 청구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3. 2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6.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창국, 판사 김자림, 판사 윤이환